싱가포르 펀드를 운용하는 스위스 매니저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금융기관법(Financial Institutions Act, FinIA; FINIG)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스위스 포트폴리오 매니저 또는 집합자산 운용자가 싱가포르 펀드를 운용하려는 경우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싱가포르 자회사를 설립하여 펀드운용 CMS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그 자회사가 Section 13O 또는 13U 펀드를 운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스위스 모회사는 위임에 따른 하위 자문사 또는 하위 운용사 역할을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공식 매니저(manager of record)가 되어야 하며, 인센티브가 요구하는 투자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존 싱가포르 라이선스 매니저를 공식 매니저로 선임하고 스위스 회사가 투자자문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더 빠르고 저렴하지만, 스위스 회사는 자체 라이선스를 갖지 못하고 싱가포르 파트너에 의존하게 됩니다. 셋째는 싱가포르 매니저 없이 스위스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펀드는 싱가포르 세제 인센티브도, 싱가포르 실체도 갖지 못합니다. 싱가포르 비히클이라면 Section 10L 노출과 VCC법상 거주 매니저 문제도 생깁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첫째 경로의 위임은 이전가격 문제를 낳는데, 스위스와 싱가포르 당국은 이에 같은 방식으로 답합니다. 운용보수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싱가포르 매니저와 스위스 하위 자문사 사이에 배분되어야 하며, 싱가포르 매니저는 그 기능, 자산 및 위험을 반영하는 수익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세청(IRAS)은 OECD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매출액이 1,000만 싱가포르달러를 넘는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연간 합계 1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동시 작성 이전가격 문서를 요구합니다.[1] 일반적인 결과는 싱가포르 매니저에게 얇은 원가가산 마진을 남기는 보수 배분이며, 여기에 FSI-FM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스위스 측은 하위 자문 보수를 하위 자문사가 소재한 칸톤(주)에서 일반 이익으로 과세합니다.

국경 간 관점

운용자산 4억 스위스프랑의 취리히 집합자산 운용자가 토큰화 사모대출 전략을 위해 아시아 자본을 모으려 합니다. 효율적인 구조는 싱가포르에 3명의 투자 전문인력을 둔 싱가포르 A/I LFMC 자회사가 Section 13U VCC를 운용하고, 취리히 모회사가 위임계약에 따른 하위 자문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임계약은 모회사 조직 변경으로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승인을 받습니다. VCC의 토큰화 대출 상품은 증권이므로 지정 투자자산입니다. 싱가포르 자회사는 FSI-FM을 신청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모회사의 스위스 라이선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FINMA에 그룹 변경을 통지해야 하고, 모회사의 위험관리는 위임을 포괄해야 합니다. 전체 구조를 구축하는 데는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며, 제 경험상 첫해 비용은 세 명의 급여를 포함하여 60만~90만 싱가포르달러입니다.

주

1. Income Tax Act 1947, s. 34D(독립기업원칙) 및 s. 34F(이전가격 문서화); Income Tax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ules 2018; IRAS, e-Tax Guid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최신판.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